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8.2.23.(금)		
사업명/신청위치	건대입구역 3-3특별계획구역 / 광진구 자양동 2-6일대		
의결번호	2018-구조안전4-3	심의결과 조건부(보고)의결	

[심의 내용] 구조안전 심의

-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추후 본위원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『건축법』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〈 구조안전 분야 〉

- 철근·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 관계를 고려하고, 콘크리트 강도 21Mpa를 24Mpa로 철근 강도 400Mpa를 500Mpa로 상향 바람.
- 전이매트(THK2500), 전이기둥(TC1)에 대한 구조안전성, 안정성, 시공성에 따른 정밀한 검토 바람.
 - 전이기둥 TC1, TCF1의 따철근 D10e150(상하부), D10@300(중앙부) 띠철 근 상세는 상·하부의 소성 힌지 간격과 상세를 전 구간에 걸쳐 적용하기 바람.
- 풍동실험결과와 설계 기준결과에 대한 비교 결과 요약 제시 바람.(감쇠비 등)
- 부재간의 접합부에 대한 상세 재검토 하고, 강성의 급격한 변화 최소화하기 바람.
- 연성에 대한 자료 제시 바람.
- ACT COL.을 매입한 SRC기둥 띠철근[D10@300(중앙부), D10@150(상하부)] 은 건축구조기준의 SRC 띠철근 상세에 맞지 않으므로 재검토 바람.
 - 건축구조기준 0714.6.41, 0516.4.4.의 합성기둥의 띠 철근의 직경은 기둥의 장변 치수의 1/50, D16이하 D10이상으로 합성기둥의 띠철근 상하부 D16@200(상하부), D16@400(중앙부)임, 따라서 띠철근을 동 단면적으로 환 산하여 상하부 D13@125, 중앙부 D13@250 가능.
- 기초에 대한 PUNCHING SHEAR는 건축구조기준2016에 적합하게 산정하기 바람.

- 계속 -

2018.02.23.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8.2.23.(금)		
사업명/신청위치	건대입구역 3-3특별계획구역 / 광진구 자양동 2-6일대		
의결번호	2018-구조안전4-3	심의결과 조건부(보고)의결	

[심의 내용] 구조안전 심의

〈 구조안전 분야 〉(계속)

- 단차부위, 외벽과 접합부위 등을 고려하여 기초 내수압 슬래브 두께 적정성 검토 바람.
- 구조일반사항 거더 내진설계 보 배근상세에서 상부 철근 중앙부에서 압축철근이음 으로 표기되어 있으나, 내진설계시는 상부 철근도 인장철근이음 필요한 경우가 있으 므로 수정 바람.
- FS1과 지하외벽이 인접한 곳은 WF1단면으로 지하외벽의 하부 고정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기초부 보완 바람.
- 특수전단벽 배근 명확히 정리하기 바라며, 특수전단 벽체의 배근 상세를 계산서와 도면 추가 바람.
- 최하층 바닥 슬래브 설계에 집중 호우시 영구 배수공법에 의한 배수량보다 유입 량이 많을 시를 고려한 부력에 대하여 재검토 바람. 끝.

2018.02.23.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